

# 사법정의를 위한 국민연대

## "사법장악 독재 3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의 주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를 '3대 사법개혁법안'이라 부르며 포장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사법장악 법안'에 다름없습니다. 중국에는 권력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권력 독재'의 도구로 전략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이 법안들의 실상과 헌법적 위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고발하고자 합니다.

### 1.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일명 재판소원법,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 : 대법원 무력화 및 소송 지옥 초래

첫 번째 법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두 기관을 서로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며 법률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나, 독일은 헌법 제9장에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을 같이 규정하여 현제가 상위기관의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제도의 구조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국가적 낭비와 0%대의 인용률로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이 위헌적 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2.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 증원법, 김용민 의원 등 대표 발의) : 사법부의 정치적 예측화

두 번째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정 정권이 최고법관의 압도적 다수를 독식하는 것은, 과거 우고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 12명을 증원하여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베네수엘라를 독재 국가로 몰아넣었던 참담한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늘어난 대법관 12명을 보좌할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에서 최대 101명까지 일선 법원에서 차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울 시내 2개의 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 1개 규모의 법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인력 유출을 초래합니다. 결국 하급심이 약화되어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1심과 2심 재판은 심각하게 지연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3.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 박찬대 의원 등 대표 발의) :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입법적 겁박

세 번째 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필연적으로 1심, 2심, 3심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법리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판사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겁박입니다. 참고로, 북한 형법은 법왜곡죄를 두고 있습니다.

천대업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처럼 이는 "심판을 심판하겠다는 법"입니다. 결국 판사들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고소와 고발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정한 재판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단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 세 가지 법안은 대법원을 장악하고,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두며,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정교한 사법 장악 시나리오입니다.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은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사법제도를 훼손하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헌법이 명시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우리는 사법 시스템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공의와 법치주의의 보루임을 믿습니다.

악법이 선한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독재 법안들이 철회되고 이 땅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범국민적 연대와 저항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2월 17일

## 발기인 및 공동 선언인 대한민국 청년 100인 일동

강가은 · 구윤서 · 권세인 · 고선우 · 김기홍 · 김다은 · 김단비 · 김도현 · 김민서 · 김민선 · 김민주 · 김민지 · 김수진 · 김수현 · 김시은 · 김예원 · 김예은 · 김영범 · 김은선 · 김은영 · 김은혁 · 김정운 · 김정직 · 김지민 · 김지현 · 김찬영 · 김찬진 · 김태준 · 김택원 · 김하늘 · 김하은 · 김하진 · 김하진 · 김호윤 · 김화연 · 김희석 · 김희원 · 남윤희 · 단진형 · 류솔비 · 민상운 · 박결 · 박성아 · 박성훈 · 박수인 · 박준민 · 박진혁 · 박찬일 · 박형빈 · 박호진 · 배상현 · 배성민 · 배희재 · 백승리 · 변지혜 · 방의석 · 서빛나 · 성소연 · 성인영 · 송가람 · 송경배 · 송수민 · 신상규 · 신영은 · 심예현 · 심혜림 · 심혜미 · 엄민지 · 오상덕 · 오승중 · 오승환 · 오해성 · 오현교 · 윤기연 · 윤여민 · 윤진 · 이강희 · 이건희 · 이기세 · 이동찬 · 이상협 · 이선행 · 이선희 · 이수연 · 이수현 · 이아영 · 이예림 · 이유민 · 이윤석 · 이은지 · 이요섭 · 이재범 · 이재훈 · 이종혁 · 이지선 · 이지원 · 이하림 · 임유진 · 장시온 · 전지현 · 정예안 · 정예진 · 정주영 · 정한나 · 지승호 · 조서진 · 조용철 · 조준경 · 천웅진 · 최강호 · 최소영 · 최승현 · 최예나 · 최윤서 · 한정무 · 허예준 · 허충범 · 현예원 · 홍상현 · 황영현 (가나다 순서 120명)

 사법정의를 위한 국민연대 공식 홈페이지 [www.100-justice.com](http://www.100-justice.com)

## 근거 자료 (References)

- 법률신문,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국회 법사위 통과" (2026.02.12)  
연합뉴스, "법왜곡죄 포함 3대 사법개혁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만 남겨...대법 '국민에 피해'" (2026.02.12)  
조선일보, "조희대, 4심제 공개 반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간다'" (2026.02.12)  
YTN, "대법원장, 재판소원 공개 반대... '국민 피해...충분한 숙의해야'" (2026.02.12)  
네이트뉴스,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독일 등 해외 사례 살펴보니" (2026.02.12)  
조선일보, "與, 대법관 증원해 사법부 장악한 베네수엘라 닮아간다" (2025.10.21)  
경향신문, "민주당발 사법개혁 3법에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위험 소지 커'" (2026.02.13)  
한겨레신문, "법원행정처 '대법관 16명 증원시 1.6조+법관 174명 필요...1·2심 약화 우려" (2025.09.03)

#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법장악 3법'의 실체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형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사법 시스템의 위기

## 사법부를 뒤흔드는 3대 위헌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법)**  
대법원 판결을 헌제가 다시 심사하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헌법상 최고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여 특정 정권이 최고법원의 압도적 다수를 독식하게 만듭니다.



**형법 개정안 (법외곡죄)**  
주관적 기준으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를 입법부 아래에 예속시키고 압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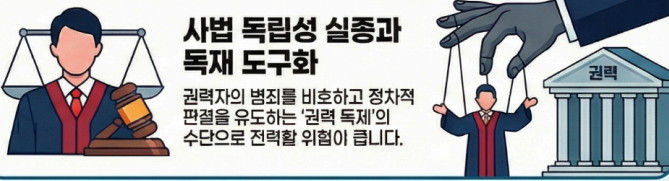
2026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사법개혁안'은 표면적인 명분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할 위험이 큼니다.

구분	현재	개정안 시행 시 예상
대법관 수	14명	26명 (12명 증원)
치출되는 재판연구관	-	최소 24명 ~ 최대 101명
일선 법원 타격	-	서울 시내 지방법원 2개 규모 인력 증발

## 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치명적 결과



**하급심 약화와 재판 지연 초래**  
대법관 보좌 인력 차출로 인해 1·2심 재판 인력이 급감하여 국민이 받는 재판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법 독립성 실종과 독재 도구화**  
권력자의 범죄를 비호하고 정차적 판결을 유도하는 '권력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니다.